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2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 박민규·박정현·김우영

유동수 · 강준현 · 박희승

정동영 · 김남근 · 김한규

조 국 · 윤후덕 · 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본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 다.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관련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사회적 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촉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화 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 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
-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해당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디지털포용 국가기관등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지능정보사업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포용정책의 추진체계

- 제5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디지털포용정책의 목표,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 2.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 3.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 · 제도의 개선
 - 4.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
 - 5.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 및 지원
 -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 7. 제10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결과 분석
 -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9.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 11.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디지털포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 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분석·평가하여야한다.
-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디지털포용위원회) ①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용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7.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8.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0.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 총리가 위촉한 사람
-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되도록 한다.
-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기관등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 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 확대와 제2항에 따른 정책대상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 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

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 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 시할 수 있다.
 -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 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능정 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

- 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 향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 4. 디지털포용 관련 법 · 제도 연구
 -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분석·평가
 -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 7. 제23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 8. 제2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임·위탁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교구(敎具) ·교재의 개발·보급
 -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 4.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 · 조사 · 보급 및 연구
 - 6.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및 포상 등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에 포함된 사회구성원 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량
-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 ⑤ 정부는 정보격차 예방·해소 교육을 포함하는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디지털역량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터(이하 "디지털역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 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우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 센터의 설치·지정, 사업범위, 운영·관리,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 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 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1. 일자리, 직무 등 취업·창업 관련 정보
 -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진로상담
 -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등 이용환경 보장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취약계층(이하 "장애인·고령자등"이라 한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누리집

-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 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완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보완·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 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보완·시정명령의 기간·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등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점검・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점검·권고와 제3항에 따른 조사·공개의 방법·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 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 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 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23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경우
-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업무 정지,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지능 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할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③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 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인증의 기준·절차 ·방법·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 보제품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제23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

- 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지정 취소·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접근성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제품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기술(이하 "접근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기 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수 있다.
 - 1.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3. 제1항에 따른 접근성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지능정보사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의 방법,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2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①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 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

- 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2. 디지털포용기술 · 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개발
-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과 관련 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 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

털 포용기술 ·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범위 및 내용과 지원의 범위 및 내용,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사회적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국가기관등은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31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4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 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과태료)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제23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의 지정을 받은 자
 -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거나 품질인증의 표 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 이 법 제24조제 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